

PHRC(펜실베이니아주 인간관계 위원회) 및 COVID-19 의료인을 포함한 공공 시설

펜실베이니아주 인간관계 위원회(Pennsylvania Human Relations Commission)는 당신이 살고, 일하고, 배우고,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는 곳에 관한 특정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집행합니다.

PHRC는 고용, 주택, 상업 재산, 공공 시설, 및 교육 기관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Pennsylvania Human Relations Act(“PHRA”, 펜실베이니아 인간관계법)을 집행합니다. 공공 시설에서, 개인들은 다음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 출신국
- 혈통
- 인종
- 성별
- 피부색
- 종교
- 장애
- 사용자의 실명, 난청 또는 신체 장애를 이유로 한 안내 동물 또는 반려 동물의 사용
- 반려 동물 또는 안내 동물의 핸들러 또는 트레이너
-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개인의 장애.

PHRC가 집행하는 법은 질병 통제 본부 또는 다른 연방, 주, 또는 지방 당국의 요건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PHRA(펜실베이니아주 인간관계법)과 시행 규정은 이들 법의 적용을 받는 독립체에 계속 적용되지만, 그 법과 규정은 공공 시설의 소유주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 시설의 소유주가 COVID-19에 관해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 CDC 또는 주/지방 공중 보건 당국이 만든 지침과 제안을 그 소유주가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공 시설의 소유주는 공중 보건 당국의 지침은 COVID-19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필시 변경될 것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 시설 소유주는 안전을 유지하는 것과 장애인에 합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가장 최신 정보를 계속 따라야 합니다.

공공 시설이라는 것은 의료인을 포함합니다.

PHRA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그에 국한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 클리닉
- 병원
- 의사 진료실
- 의료 서비스 제공자
- 약국
- 일반 국민의 일반 애용에 개방되거나, 일반 애용을 받아들이거나 청하는 다른 시설.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까?

PHRA에 따라 공공 시설로 간주되는 모든 의료 기관은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여기에는 COVID-19 팬데믹 사태 중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되거나 건설된 임시 시설들이 포함됩니다.

저는 특정 개인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병원, 클리닉, 의사 진료실, 또는 PHRA에 따라 공공 시설로 간주된 기타 건강-관련 단체의 소유주가, 보호받는 계층이라는 이유로, 어느 사람에게, 그러한 공공 시설 중 어느 시설, 그러한 공공 시설의 이점, 시설 또는 특전을 거절하거나,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불법적 차별입니다.

불법 활동의 예:

- 출신국 또는 혈통을 이유로 아시아인 또는 아시아계 미국인 출입을 거부하는 것.
- 배우자가 신체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것.

저는 특정 계층의 개인들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또는 특정 계층의 개인들을 선호한다고 광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느 사람이 보호받는 계층이라는 이유로, 어느 사람에게, 그러한 공공 시설 중 어느 시설, 공공 시설의 이점, 시설 또는 특전을 거절하거나, 보류하거나, 거부한다는 취지로, 또는 보호받는 계층의 사람의 애용은 달갑지 않거나, 불쾌하거나, 허용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거나 청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서면의 또는 인쇄물의 통신문, 통지문 또는 광고문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표, 회람, 발행, 게시 또는 우송하는 것은 불법적 차별입니다.

불법 활동의 예: 클리닉은 아시아인 또는 태평양 섬주민 혈통의 모든 개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는 표지판을 게시할 수도 없고 백인들만 환영한다는 표지판을 게시할 수도 없습니다.

연방 정부는 의료 분야 내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보호도 제공합니다.

연방 정부는 자신의 건강 또는 장애 상태에 따른 차별을 당하는 사람에게 특정한 보호도 제공합니다. 예컨대, Affordable Care Act(적정가 진료법)의 제1557조는 Civil Rights Act of 1964(1964년 시민권법)의 제6편, Education Amendments of 1972(1972년 교육 수정법)의 제 9편, Age Discrimination Act of 1975(1975년 연령 차별법), 및 Rehabilitation Act of 1973(1973년 재활법)의 제504조에 의거한 규정들을 통합하고 인종, 피부색, 출신국, 성별, 연령, 또는 건강 프로그램에 따른 장애, 또는 연방 재정 보조를 일부 받는 활동에 따른 차별 및 혜택의 거부를 금지합니다.

당신의 연방 시민권, 그리고 당신 또는 가족이 [여기](#)에서 차별을 겪는 경우 당신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상세히 알아보십시오.

COVID-19 팬데믹 사태 중에 고려할 사항:

PHRC는 의료인들이 이 팬데믹 사태 동안에 받고 있는 엄청난 압력을 알고 있습니다. PHRC는 모든 사람에게 공동체의 모든 부문들에 주의하라고 상기시켜 드리고자 하고 비상 대응 노력의 혜택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이 치료 대상자인지의 여부에 관한 법 적용을 받는 독립체의 결정은 입수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에 근거한 개별적 환자 평가에 근거해야 합니다.

COVID-19 팬데믹에 관련된 펜실베이니아주 보건부의 상세한 정보 및 자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COVID-19 팬데믹에 관련된 질병 통제 및 예방 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상세한 정보 및 자원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PHRC는 어떻게 저를 도울 수 있습니까?

당신이 불법적 차별의 피해자였다고 생각하는 경우 당신은 고충 신고서를 펜실베이니아 인권 관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 고충 신고서 서식의 사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phrc.pa.gov>

그 서식은 333 Market St., 8th Floor, Harrisburg, PA 17101-2210으로 우송할 수 있거나 다음 주소로 이메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PHRC@PA.GOV. 긴급 지원 또는 지침이 필요한 개인인 경우, 오전 9:00와 오후 5:00 사이에 [717-787-4410](tel:717-787-4410) 번으로 전화하십시오.